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등록·신고를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·시설 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「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등 11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·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

제1조(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1 제1호나목1) 중 “전처리실, 일반실험실, 조사·분석실 등 분석실 면적의 합계가 10m² 이상이어야”를 “검정실은 품위·품종·일반성분 검정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”로 하고, 같은 목 2)가)(1) 중 “사람 또는”을 “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1) 중 “전처리실, 일반실험실, 기기분석실 등 검정실 면적의 합계가 250m² 이상이어야”를 “검정실은 무기성분·유해물질 검정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”로 하고, 같은 목 2)가)(1) 중 “사람 또는”을 “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농약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1)가) 중 “졸업한 자나”를 각각 “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지도·교수 및 운영 요원”을 “지도·교수”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“교수 요원과 운영요원”을 “교수 요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운영요원란을 삭제하며,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“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보관시설: 50제곱미터 이상”을 “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보관시설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방음시설, 조명시설, 소방시설, 보건시설 등”을 “소방시설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가목 중 “강의실: 50제곱미터 이상”을 “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강의실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방음시설, 조명시설, 소방시설, 보건시설 등”을 “소방시설”로 한다.

제4조(「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중 “5명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수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6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7의3 인력의 기준란 제2호 중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0의2 제1호가목의 기준란 중 “30㎡ 이상(타 사무실과 공용으로

사용할 수 있음)”을 “사무에 필요한 면적(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의 기준란 중 “60m² 이상”을 “교육에 필요한 면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의 기준란 중 “인터넷 교육 신청 및 접수, 출·결석 상황관리,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력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”을 “온라인 교육 신청·접수, 출·결석 상황관리, 수료증 발급, 교육이력의 기록·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(온라인 교육시스템은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나목의 “2명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종자산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나목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사목 중 “방음시설, 채광시설”을 “채광시설”로 하고,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.

가. 강의실: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갖춘 강의실을 하나 이상 갖추고, 필요시 칸막이(불연재) 사용이 가능할 것

3) 분자표지 실습실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.

제8조(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5 제2호가목 중 “60m² 이상(의자,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고 1m²당 수용인원이 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)”을 “교육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 하나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.

제9조(「축산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호가목 중 “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”을 “사무실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연산처리장치가 6개 이상의 서버능력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”를 “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(「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및장비의 실험실 및 사무실란 제1호 중 “실용면적 20m²”를 “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 1개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및장비의 실험실 및 사무실란 제1호 중 “실용면적 20m²”를 “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 1개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자목의 5) 실험실 면적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란을 삭제한다.

제11조(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다.

별표 6 제2호나목3)의 시설 및 장비란 사) 중 “3대”를 “2대”로 하고, 같은 호 사목1)의 시설 및 장비란 라) 중 “5대”를 “4대”로 하며, 같은 란 하) 중 “3대”를 “2대”로 하고, 같은 란 더) 중 “3대”를 “2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)	제3조(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도시농업 <u>지도·교수 및 운영</u> <u>요원</u> 의 보유현황	1. ----- <u>지도·교수</u> ----- -----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의6(저수조청소업의 신고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. 1. 2. (생략) <u>3. 청소감독원</u> ⑤ ~ ⑦ (생략)	제23조의6(저수조청소업의 신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등록기관의 지정)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 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·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야 한다.	제8조(등록기관의 지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시설·장비	2. -----
가. <u>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</u> <u>실</u>	가. <u>사무실</u>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다. <u>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</u> <u>이트 이상이고 연산처리장</u> <u>치가 6개 이상의 서버능력</u> <u>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</u> <u>전산장비</u>	다. <u>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</u> <u>는 데이터베이스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54조(규제의 재검토)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	제54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

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1. 제8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기관 지정에 위한 인력 및 시설 · 장비의 기준: 2017년 1월 1일 2. ~ 13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<삭제> 2. ~ 13. (현행과 같음)
---	---